

의안번호	제421호
의결연월일	2017. 11. 1

-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0. 26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17. 10. 26

다. 상 정 일 자 : 2017. 11. 1

제235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총무과장 : 인 영 환)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 주민갈등 및 불편을 초래해 온 지역의 행정구역 내 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기존 아파트를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던 오가면 신석리 지역을 아파트와 아파트 외 지역으로 분리 후 아파트 지역의 반 신설 등
- ◎ 예산군 설치 반 수 : 1,225반 ⇒ 1,227반(증 2반)

현 행				변 경			
읍·면	행정리명	반	관할구역	행정리명	반	관할구역	
오가면	신석리	1	철뚝, 우성아파트	신석1리	1	철뚝	
		2	안뜸, 신대(북쪽)		2	안뜸, 신대(북쪽)	
		3	신대(남쪽)		3	신대(남쪽)	
		4	백석		4	백석	
				신석2리	1	우성아파트 1~6층	
					2	우성아파트 7~12층	
	<b>26리 80반 ⇒ 27리 82반(증 1리 2반)</b>						

### 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: 복 준 수)

- 본 조례안은 오가면 신석리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‘신석리’ 를 ‘신석1리, 신석2리’ 로 분리하고, 신석2리에 2개 반을 신설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략

### 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### 6. 심 사 결 과

-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